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 관련 처분면제 근거 신설 >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98호)

2024.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9. 5.

다. 회 부 일: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소지품 등을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가 주류를 몰래 반입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현행 주류 판매·제공 금지 외에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하되,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를 속이고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2. (생략) 3. 주류를 판매· <u>제공하지</u> 아니할 것 4. ~ 6. (생략) ②·③ (생략)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u>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u> -----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을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 ----- ----- ----- ----- ----- ----- ----- ----- -----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 설>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를 속여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②·③ (생략)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2. 검토의견

현행법 제22조¹⁾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내 화재·안전사고 예방조치,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금지, 주류 판매·제공 금지,²⁾ 접대부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성매매 알선·제공 금지 등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 제27조³⁾에 따라 영업폐쇄·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⁴⁾

-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동법 시행령에서는 ‘주류의 보관’ 및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도 함께 금지하고 있음.
-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4) 노래연습장 주류 관련 위반사항 통계는 [참고] 자료 참조

다만,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주류 등을 주문한 뒤 오히려 업주에게 영업정지 사항임을 주장하며 협박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이용자가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악용하여 고의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오히려 업주에게만 행정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되게 되어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현행법 제27조제1항 단서와 같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폭행·협박 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바 있음.⁵⁾

그러나 이는 ‘청소년 출입’과 관련해 이용자의 적극적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류 반입’과 관련해서도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소지품 등을 검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래연습장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가 주류를 몰래 반입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사유로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를 속여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위와 같은 적극적 방법으로 업주 및 종사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까지 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5) 2022. 9. 27. 법률 개정, 2023. 3. 28. 시행

다만, 현행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 시행령 [별표 1]⁶⁾은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묵인(默認)’⁷⁾은 어떠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용자가 업주를 속여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업주가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령에 따르더라도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한편, 개정안과 같이 면책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첫째, 현재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22조제1항‘제6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28조제1항제2호9)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반면,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 불가할 뿐 아니라 제34조제3항제2호¹⁰⁾에 따라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 관련)

1.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모르는 체하고 하려는 대로 내버려둠으로써 슬며시 인정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8) 문화체육관광부도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 반입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주류 반입의 ‘묵인’을 제22조제1항‘제3호’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는 것인바, 업주가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¹¹⁾

둘째, 현행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주류 반입과 관련한 면책사유를 신설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면책사유의 명확화를 위해 ‘폭행·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¹²⁾

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11)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재 수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노래연습장 업협동조합은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면 현행보다 더 엄격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임.

12)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용자 주류 반입 관련 노래연습장업자의 억울한 행정처분을 방지를 위해 면제 규정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나, ‘묵인’은 ‘인지’를 전제로 하고, 업소 내 주류 반입 방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폭행·협박’ 등으로 업주가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 면제의 제한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아울러, 이처럼 ‘폭행·협박’을 면책사유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류의 ‘판매·제공’과 관련해서도 이용자의 ‘폭행·협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봄.

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시행령 [별표 1]은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 외에도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현행의 주류 ‘판매·제공’ 금지 외에 주류 반입의 ‘묵인’을 추가하는 경우 주류의 ‘보관’도 함께 추가하는 것이 보다 법체계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

노래연습장 주류 관련 위반사항 통계

시·도별	사업체 수	법령위반 건수	주류 판매·제공	주류 보관	주류 반입 목인
서울특별시	5,305	1,232	722	108	130
부산광역시	1,474	184	96	21	21
대구광역시	1,520	246	115	23	7
인천광역시	2,164	480	236	61	72
광주광역시	928	112	71	-	3
강원도	794	53	37	-	-
대전광역시	1,231	202	95	24	10
충청북도	1,059	114	73	4	6
울산광역시	655	81	44	8	4
충청남도	792	159	97	9	6
경기도	7,339	1,558	868	121	108
전라북도	852	150	78	2	11
전라남도	725	83	47	5	-
경상북도	1,416	149	65	19	12
경상남도	1,546	229	138	8	28
제주특별자치도	83	30	14	4	4
세종특별자치시	144	26	18	-	3
합계	28,027	5,088	2,814(55.3%)	416(8.1%)	425(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